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00
----------	-------

발의연월일 : 2026. 10. 6.

발 의 자 : 이용선 · 안태준 · 박해철
장종태 · 김남근 · 윤건영
허 영 · 박희승 · 김준환
송재봉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기한을 15일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60일의 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대금 회수 지연은 재하도급 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함.

또한, 선급금은 원활한 공사 및 제조 착수를 위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15일의 전달 기한은 원사업자가 자금을 사적으로 운용하거나 유희 자금화할 여지를 주어 수급사업자의 초기 자금 조달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지급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하도급 거래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5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60일”을 “30일”로, “15일”을 “7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각각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5일”을 “7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60일”을 각각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60일”을 각각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5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16조제4항 전단 중 “15일”을 “7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60일”을 “30일”로, “15일”을 “7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u>15일</u>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 ----- ----- ----- ----- ----- ----- ----- ----- 7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u>60일</u> ”은 “원사업자가	③ ----- ----- ----- ----- ----- ----- ----- ----- ----- ----- ----- 30일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11조(감액금지)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무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

-----7일-----.

제11조(감액금지)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_____

 _____ 30일 _____

— —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
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
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
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

30일

<삭 제>

2. (현행과 같음)

②

30일

3

0일

③

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
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
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
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
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

7일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30일

30일

30일

⑦

30일

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
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
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①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
나 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
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
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

-----30일-----

-----30일-----

⑧ -----

-----30일-----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① -----

-----7일-----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
급대금의 조정) ① ~ ③ (생
략)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
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
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
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
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
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
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
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
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

② _____

30일 _____

_____.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
급대금의 조정)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7

일

30일

부터 15일”로 본다.

-----7일-----.